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8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강득구 · 서삼석 · 송재봉
이학영 · 정일영 · 서영교
민병덕 · 박해철 · 임미애
양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

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 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을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학력·출신학교·신앙”으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기초심사자료 활용의 공정성 보장)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 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 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 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직자 본인의 <u>출신지역 · 혼 인여부 · 재산</u>	2. ----- <u>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 학력 · 출신 학교 · 신앙</u>
3. (생 략)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u>제4조의4(기초심사자료 활용의 공정성 보장) 구인자는 구직자 를 모집 · 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 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 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u>